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구미과학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관내 타센터와의 명칭혼선을 피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구미과학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을 “구미과학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을 “구미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으로, “404번지”를 “704번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체험관내”를 “과학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목적 홀”을 “다목적 강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험관”을 각각 “과학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체험관”을 각각 “과학관”으로 한다.

제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그 가족 1인

제8조제10호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체험관”을 각각 “과학관”으로, “체험관 시설(다목적 홀)”을 “과학관 시설(다목적 강당)”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중 “체험관”을 각각 “과학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험관”을 각각 “과학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체험관”을 “과학관”으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관 랑 료 (제6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이상)	
어 린 이	1,000원	500원	6세~12세, 초등학교
청소년·군인	2,000원	1,000원	
어 른	3,000원	1,500원	

시 설 사 용 료 (대관료)

시설명	사용기한	사용료	비 고
다목적 강당	1회 4시간	40,000원	1시간 초과시 10,000원 추가

[별지 제1호서식]

관 랑 권

< 앞 면 >

1. 관 랑 권 (3종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2.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 20mm →	← 50mm →	← 50mm →	← 60mm →	
편 철 부 분	구미과학관 관람권 【보관용】 (원 부) ①일련번호 : ②구 분 : ③관 랑 료 : 원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구미과학관 관람권 【영수증】 (영 수 증) ①일련번호 : ②구 분 : ③관 랑 료 : 원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구미과학관 경관 사진	↑ 60mm ↓

< 뒷 면 >

← 110mm →	← 50mm →	← 20mm →	
【이 용 안 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구미과학관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4. 어린이 동반 시 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 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 철 부 분	↑ 60mm ↓

[별지 제2호서식]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사무실 (주택)	
	E-mail			휴대폰	
행사의 명칭 (내용)					
사 용 기 간		■ 사용기간 : 년 월 일(요일), : 부터 년 월 일(요일), : 까지 ■ 행사준비 :			
사 용 시 설					
사 용 료		금 원			
사 용 인 원		명			
특 기 사 항					
비 고		첨부 1. 행사계획서 1 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알면]

【 허가번호 제 호 】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허가서		
1. 사 용 자	주 소	
	성 명	
2. 사용시설		
3. 사용인원		
4. 사 용 료	금 원정(₩)	
5.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일 시간)	
6. 사용목적 (제 목)	()	
7. 비 고	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8. 담 당 자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E-mail :
위와 같이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구미과학관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과학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과학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과학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7. 시설사용료는 사용일 7일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 시에는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8.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관람시간 내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시설 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행사변경·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1. 사용 시 의견 차이는 본 과학관과 사용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 신청 사유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명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절 취 선 -----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명			
기 타			

위와 같이 구미과학관 시설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구미과학관 시설사용허가 대장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구미과학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전화번호	
사용시설				
납 입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용취소 사 유				
첨 부	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과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
(제7조 관련)

구미과학관

년 월 일 (요일)

구분		금 일		누 계	
		인원(명)	금액	인원(명)	금액
합 계					
관 략 료					
개 인	어 린 이				
	청 소 년				
	균 인				
	어 른				
소 계					
단 체	어 린 이				
	청 소 년				
	균 인				
	어 른				
소 계					
무 료	유아(5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기 타				
소 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

			결 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미과학관----- ----- ----- -.
제2조(위치)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진평동 404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구미과학관(이하 “과학관” ----- ----- 704번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
1. “관람료”란 체험관내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 ----- 과학관 내----- ----- ----- ----- --.
2. “대관료”란 다목적 홀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다목적 강당-----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	제4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과학관----- -----

00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물을 이용객에게 공개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조(관람료) ①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관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체험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학관 -----

-----.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과학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① 과학관-----

-----.

② -----

----- . ----- 과학관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4.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생략)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그 가족 1인

8.·9. (생략)

제8조(관람료 면제)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그 가족 1인

8.·9. (현행과 같음)

10. 기타 시장이 <u>체험관</u>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 <u>과학관</u> ----- ----- -----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u>체험관</u>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u>과학관</u>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가 <u>체험관</u>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 -- <u>과학관</u> ----- ----- ----- -----.
제12조(대관허가) 시장은 <u>체험관</u>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 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 여 <u>체험관 시설(다목적 홀)</u> 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대관허가) ----- <u>과학관</u> ----- ----- ----- ----- <u>과학관 시설(다목적 강 당)</u> ----- -----.
제13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생 략)	제13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 청 접수 시 허가여부를 결정하 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u>의거</u> 그 결과를 신청인	② ----- ----- ----- ----- <u>따라</u>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관료) ① (생략)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생략)

③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체험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체험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

제15조(대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과학관-----

--

2. (현행과 같음)

③ -----
----- 과학관 -----

-----.

제16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

----- 과학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운영) ① ----- 과학

관-----

운영 할 수 있다.

② 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제
반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
에게 위탁한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
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
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
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20조(준용) 체험관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
례」를 준용한다.

-----.

② 과학관 -----
-----.

제18조(운영지원) -----
----- 과학관-----

-.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

----- 과학관 -----

-----.

② ----- 제1항에 따라 -----

-----.

제20조(준용) 과학관 -----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